# 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180호

## 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| 제재대상 | 내용(회사명, 성명 등) |
|---|---|
| 기 관 | ㈜팍스넷 |

## 2. 조치내용

○ **(금감원 원안)**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'자본시장법')」 제101조 제2항 등에 따라, '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' 및 '유사투자자문업자의 표시·광고 규제 위반'과 관련하여 각각 과태료 3.6백만원 및 과태료 48백만원(총 51.6백만원) 부과

## 3. 조치이유

### 가. 지적사항

1)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

□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①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하거나 ②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③대표자 또는 임원을 변경한 경우,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,

○ ㈜팍스넷은 20xx.xx.xx.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, 20xx.xx.xx. 금융위원회에 지연보고(2일 지연보고)한 사실이 있음

2)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표시·광고 규제 위반

□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

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, ①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②손실 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, ③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거나, ④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제시하는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,

○ ㈜팍스넷은 ③20xx.xx.xx. “11월 목표 100%×10종목” 등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의 표시·광고를 자사 카페에 게시하였으며,

○ ④20xx.xx.xx. “◆◆◆◆◆ ◆◆ 3일 50%, ◆◆◆◆◆ 폭발”, “◆◆◆◆◆◆ 300%, ◆◆◆ 100%, ◆◆◆◆(7일 300%)” 등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제시하는 등 투자자 보호·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·광고를 자사 카페에 게시한 사실이 있음

## 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법」 제101조 제2항 및 제101조의2
□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102조의2